

1. 제정이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2022. 6. 9.)을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 정보) 동 법에 따라 공개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규정*(시행령안 제2조)

*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원자력안전관리 정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등

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매년 업무보고 의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시행령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2조)

* 1.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4. 대학, 5.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가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비공개 세부 기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온라인 공개 및 매년 점검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안 제4조)

-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여 공개하되, 제외 사유 명시
- 부분 공개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세부 기준에 명시

라. (연구기관등에 정보 제공)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기관등의 범위와 정보 제공 요청 절차, 정보 제공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안 제5조, 시행규칙안 제3조)

마. (지역주민에 정보 제공)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와 방법 등 규정(시행령안 제6조)

- * 1. 원자력이용시설 안전관리 검사결과, 2.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3.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저장 현황 4. 방사능방재훈련, 5. 그 밖의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

바. (장해방어조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안전협의회’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공개(시행령안 제7조)

- * 1. 상황이 발생한 사업자 명칭·주소, 2. 상황 발생 일시 및 장소와 원인, 3.방사선 장해상황, 4. 사업자의 안전조치 내용 및 계획,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결과

사. (원자력안전협의회) 법 제13조제4항에서 위임한 원자력안전협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시행령안 제9조, 제10조)

-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20명 내외 구성하며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만 가능(원자력 관련 전문가는 예외)
- 협의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 원자력 사건·사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현안, 원자력안전 관련 지역주민의 제기 현안, 기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교환 및 협의

3. 검토사항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치 및 입법예고(∼’22.3월초), 규제심사(∼4월), 법제처 심사(∼5월),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재가(시행령, 5월), 총리재가(시행규칙, 5월), 공포·시행(6월)

【붙임】 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1항 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건설·운영과정에서의 원자력안전관리 정보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제4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3. 「원자력안전법」 제8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원자력안전법」 제9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5. 「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6.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원자력선의 입출향 신고에 관한 정보
7.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정보

8. 「원자력안전법」 제105조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결과·평가에 관한 정보

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업무에 대한 계획(국가방사능방재계획)과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10.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에 관한 정보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전국정보공유센터”라 한다)와 전국정보공유센터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주민에게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지역정보공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 관련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 경험이 있고,
정보공유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⑤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원자력안전정보 관련 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⑧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를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지정을 취소받은 정보공유센터는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관리
중인 원자력안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
으로 파기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기관·
단체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의 세부 기준 등) ① 원자력안전위

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비공개 사유를 정한다.
2. 제1호의 비공개 사유는 분류가능한 최소 단위별 비공개 근거와 세부 사유로 작성한다.
3. 알기 쉬운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그 뜻을 밝힌다.
4. 세부 기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적용 범위

나. 책임관 및 주관·처리부서

다. 관련 교육 및 정보통신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5. 내·외부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때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비공개 근거 및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3항에 따른 정보의 부분 공개 사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제1항의 세부 기준에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별도의 절차를 정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비공개 세부 기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학교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수집·연계등 원자력안전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그 제공사실 및 정보의 요지를 공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학술연구
및 원자력안전정책 개발을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연구기관등은 수집·연계등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총리령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으로부터 수집·연계등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공 여
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한 연구기관등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기관등이 제공을 요청한 수집·연계등 원자력
안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3자 또는 해당 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 정보의 세부 종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2.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고·고장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성 폐기물 반입 및 저장 현황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에 따른 방사능 방재훈련
5.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자력안전정보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원자력안전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한 제공
2.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제공
3. 법 제5조에 따른 정보공유센터를 통한 제공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되 제공을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 그밖에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원자력이용시설 장애방어조치 보고 관련 공개 절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해 최초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원자력안전협의회에 보고 받은 내용을 이용 가능한 통신 수단을 통해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조치 사항이 완료된 이후 공개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의 사항이 발생한 해당 원자력사업자 명칭, 주소
2.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의 사항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3.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4. 해당 원자력사업자의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결과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원자력안전정보 보관을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정보 보관책임자의 지정 등 원자력안전정보 보관을 위한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 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제9조(원자력안전협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협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당연직위원

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및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속한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 2명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른 지역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위촉직위원

가.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해당 시·군·구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해당 시·군·구의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다. 시·군·구의 장이 추천하는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
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이하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라고 한다.)의 전문가

라. 시·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해당 시·도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
대표

마. 시·도의 장이 추천하는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사.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2호다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협의회 운영을 위해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면 추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협의회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2. 원자력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3.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4. 원자력안전 관련 지역주민의 제기 현안에 대한 협의

5. 기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 협의

제10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협의회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협의회는 다른 지역의 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하여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위탁 등)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어 것. 단, 인력 중 1명 이상은 원자력안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보공유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유센터의 장 1명 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이하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라 함)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원자력안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보유·관리, 연계·가공·분석 등 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1명 이상 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제공 등 소통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1명 이상
시설	1.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한 자료실, 사무실 및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 2. 원자력 정보 공개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것

[별표 2]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3항 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조제3항 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공유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5조제3항 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1항제1호	500	800	1000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원자력 안전정보의 안전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1항제2호	400	600	800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2호	200	300	400